

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 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(김태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2년 5월 일
발 의 자 : 김태근, 김성현, 김재상
김정곤, 김정미, 박교상
박주연, 윤종호, 이수태
임춘구

1. 폐지 이유

-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·군 단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 적용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어 존치 이유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함.

3. 폐지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 : 조례안

5. 관련법령

-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, 제4조
-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1항

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 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 범위에관한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범위를 적용하기 위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도심 및 외곽지역의 범위) ①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범위 적용을 위한 도심지역은 구미시 도시계획구역중 시계내의 주거지역·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중 준공업지역으로 한다.

②외곽지역은 제1항의 도심지역을 제외한 구미시 전지역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구미시 교통권역으로 한다.

③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연결하여 시행하는 사업 및 시설은 도심지역을 적용한다.

제3조(교통영향평가의 대상)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시설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【별표1】 과 같다.

제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련법령]

<도시교통정비촉진법>

제3조(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·고시)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·고시할 수 있다.

1.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(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·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)
2.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·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
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

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9.6.9>

[전문개정 2008.3.28]

제4조(교통권역의 지정·고시)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(이하 "도시교통정비지역"이라 한다)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(連繫)된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통권역(交通圈域)을 지정·고시할 수 있다.

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권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9.6.9>

[전문개정 2008.3.28]

<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>

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[시행1995.1.1] [대통령령 제14486호, 1994.12.31, 타법개정]	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[시행1996.6.30] [대통령령 제15097호, 1996.6.29, 전부개정]
제9조(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)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 또는 시설은 별표1과 같다. 다만, 상주인구 30만미만인 중심도시의 교통권역중 읍·면지역의 경우에는 별표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	제13조 (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)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 또는 시설은 별표1과 같다. ②시·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의 규모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.